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질의·응답사례

2010. 2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질의·응답사례

2010. 2



목 차

▶ 관련 규정	1
▣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5
▶ 질의응답 사례	1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08. 2.22, '08.9. 28) 관련	13
◉ 분야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관련	18
1. 국토 ·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분야	18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분야	58
3. 교통시설의 건설 분야	76
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분야	83
5. 수자원 및 해양개발 분야	85
6. 산지의 개발 및 골재채취 분야	92
7.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분야	99
8. 기타사업	107
◉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관련	132
◉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 협의대상 여부 관련	133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 대행자, 대가기준, 조례 및 검토 위원회 구성 · 운영 관련	135

관련 규정(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
|---------------------|----------------|
|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
| 3. 에너지 개발 | 4. 교통시설의 건설 |
|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행정계획의 수립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제4조(검토결과의 통보) ① 중앙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 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⑥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⑦ 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 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0. 5. 4>
2. 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3.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 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 · 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8. 9. 2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1. 행정계획

구 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가. 국토 ·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9)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2)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택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구 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시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다.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구 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어촌 · 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3)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 ·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 · 도, 시 · 군 · 구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 · 도, 시 · 군 · 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5)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6)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비 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되, 변경 수립·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 표 가목④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개발사업

구 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가. 국토 ·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에 따른 특정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계획(저수지 신설 · 재개발, 간척 · 매립 · 개간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사업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 · 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다만, 마을 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승인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 사업 시행 전)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택환경개선사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 ·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인가(주택재개발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시행 인가 전
	1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전

구 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공장설립등 승인 전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지정	센터 지정 전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별표 1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 (열원시설에 한함)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노반·궤도시설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	공사 시행 전
	5) 「항공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구 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 「어촌 · 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 허가 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계획 수립 전)
	2)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 (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	임도 설치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에 한함)	허가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허가 전
	6)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채취 허가 전
	8)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실제 훼손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채광계획 인가 전
아.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다만, 특별시지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비 고]

1. 위 표에 개발사업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증가 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 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사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08. 2. 22, '08. 9. 28) 관련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 계획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L=1.0\text{km}$, $B=15.0\text{m}$, 면적 $15,000\text{m}^2$)
 - 1) 최근 개정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08. 2. 22)에서 ‘부지면적이 $5,000\text{m}^2$ 이상이거나 길이 2km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의 경우 길이는 2km 미만이나 폭원과 길이를 고려하여 면적이 $5,000\text{m}^2$ 를 초과할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2) 행정계획단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단계일 경우에도 상기(1)과 동일하게 협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별표 1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규모를 말함.
- ☞ 따라서 행정계획단계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와 개발사업단계 전체 대상사업에서 공원, 주차장, 공장 등 면적개념의 개발계획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5,000\text{m}^2$ 를 적용하고, 도로, 철도, 하천 등 선 개념의 개발계획의 경우에는 길이 2km 를 적용함.



질의

- ▶ 도로사업이 $L=1.5\text{km}$, $B=8.0\text{m}$ 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부지면적 $5,000\text{m}^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종류는 택지

개발조성, 산업단지조성, 공원조성과 같이 사업의 규모를 면적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고, 길이 2km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사업의 종류는 도로, 철도, 하천과 같이 사업의 규모를 선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함.

- ☞ 따라서,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길이 2km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대상이 되므로 1.5km인 도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08. 2. 22) 개정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가 정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마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가 정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내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 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질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 지역, 녹지지역에서 서로 간의 변경(예, 상업지역↔주거지역, 녹지지역↔공업 지역 등)을 하는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의 행정계획단계 중 가목 4)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 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며,
- ☞ 용도지역 변경 중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간 상호 변경과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녹지지역에서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수립 · 지정 또는 변경 허가 ·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함으로 되어있는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통해 학교시설구역에 접한 인근의 토지를 학교시설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 당초면적 319,051m², 변경 후 380,740m², 증감(변경) 61,725m²로 변경면적이 30%미만이고 증가 면적은 5,000m²이상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고 증가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이 5,000m² 이하의 사업규모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동일사업자가 인접 지역에 대해 5,000m² 이하의 규모로 각각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할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단, 각각의 사업부지는 인접되어 있고, 총 면적은 5,000m²를 상회함.)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가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재해영향을 받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범위에 해당된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사업 승인 전 부지면적이 5,000m² 이상일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5,000m²이상에 한하여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08년 9월초에 사업구역에 6개 공장신설사업(각 공장 사업주가 별개임)으로 4개 공장은 5,000m² 미만, 2개 공장은 5,000m² 이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접수를 하였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9. 28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협의대상인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08. 9. 28 이후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됨.
- ☞ 따라서 ’08. 9. 28일 이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지면적 5,000m² 이상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계획관리지역 내 약 20,000m²의 부지 안에 5개부지(최고 8,700~최소1,350m²)로 분할하여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여 공장개발을 실시하려하는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와 각각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10,000m² 이상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재해영향을 받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범위에 해당된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분야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관련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분야



질의

- ▶ 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결정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시·군 위임사항인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 하여야 함.



질의

- ▶ ○○대학교는 ○○캠퍼스 조성사업(부지면적 약 87,000m²)을 위해 사업계획을 2005년 8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일부이전(변경)계획 승인을 득하였음. 도시계획시설(학교)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조성 계획승인 절차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본 사업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시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각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 이전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동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의 경우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도시 관리 계획(학교시설)을 행정계획 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거쳐야 함. 행정계획단계에서는 입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협의하며, 개발사업단계에서는 공사 중·후 재해저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토·협의를 하고 있음.



질의

- ▶ 도시개발사업부지 면적 500,000m²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장임. 자연재해대책 법에 의하면 개발사업 적용대상에는 제외되나, 행정계획상 지구지정 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 ▶ 또한 개발사업 항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전체 도시계획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역의 사업(가령 도시계획도로 일부개설 등)을 사업시행 시 개별적으로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전(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행정계획의 범위 및 협의시기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정 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전이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고 먼저 구역지정을 할 경우 협의시기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개발계획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자연녹지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과 협의 시기는?



답변

- ☞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계획수립단계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으로서 사업시행단계인 실시계획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계획승인고시(2005. 8.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의제 처리되지 않는 관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담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에 단독주택 허가 시에도 지목변경이 수반되거나, 50cm이상 절·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고, 농민이 영농의 편익을 위해 전답을 개량하거나, 농로 개설 시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담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심의를 받는 사업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담변

- ☞ 행정계획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은 사업시행단계인 실시계획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00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기는?



답변

-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2004년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 제38조와 『농어촌 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에 의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경관정비, 소득증대사업 등을 주 테마로 2~3개 법 정리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국지적이고 소규모인 10여개 사업을 70억 상당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기본계획 수립 후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해당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행정 계획에 의한 협의과정은 없으며, 시행계획 수립 시 각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 개발 사업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환경청의 협의를 받고 있습 니다만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경우는 자연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제시된 『농어촌정비법』 제27조와 제31조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및 동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계획에 의한 협의 없이 시행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면, 사업의 규모(면적, 길이 등)와는 상관 없는지? 또, 단순한 사업(예를 들어, 돌담을 정비하고 경관개선을 위한 꽃길을 조성하는 등 자연재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농어촌정비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은 행정계획단계로서 개발계획 수립 시에 자연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은 개발사업단계로서 시행 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저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있음.
- ☞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규모(면적, 길이 등)는 부지면적 5,000m² 이상이거나 길이 2km 이상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7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법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고 도지사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및 확정 통보 후 사업을 시행할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도지사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및 확정 통보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행 전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질의

- ▶ 도시계획시설(학교)로서 세부시설변경 결정을 받을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지 않았고, 부지면적은 증감이 없으며 건축물 위치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 막바지 시점인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 약간의 면적(11m²)이 증가하게 되었음. 실시계획 인가는 2004년에 받은 상태이며, 이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등의 인가(변경) 전에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협의하는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학교부지면적 증감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세부 시설변경 결정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1998. 1. 15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2003. 6. 17 도시계획시설(학교 : 세부 시설) 결정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 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 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협의를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에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상기 개발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개발사업을 의미하는지?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등의 금지”에 개발사업의 의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을 말함.



질의

- ▶ 본 사업은 ○○도 지역 골프장 조성사업이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2004년 10월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서를 해당 군에 제출한 상태이나, 입지 등의 문제로 금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음. 이렇듯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사업을 재추진 할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 참고로 본 사업은 해당 군에서 국토이용계획입안을 위한 공고절차는 거쳤으나, ○○도에 입안되지 않았음.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시행일('05. 8. 17)이전인 '04년 10월에 『국토이용관리법』에

-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절차 이행중인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협의 중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건축물이므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항목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란 항목이 있으며 초·중등학교는 『고등교육법』 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바 초등학교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건축물인지?



답변

- ☞ 학교설립 인가와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 시에만 해당됨. 단,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홍수 시 농경지 및 가옥이 상습 침수되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배수펌프장 및 유입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임.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유수지 및 유입수로 약 40,000m²를 방수설비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에 있음. 본 설계를 수행하면서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여러 차례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자문을 득하였음.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수립·확정·허가·

인가·승인·결정 등을 할 시에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하는 제도로서 방재시설의 경우에도 해당됨.

-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최초 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는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혹은 기하구조변경 등 변경 건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지?
-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임. 그 이후 사업 시행 중 경미한 사항(종단경사 변경 및 도로 횡단 통로박스 통과)에 대해 변경을 할 때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해당법령에서 변경사항을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시계획인가(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포함)를 득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 되어 관련 개별법에 의거 의법(고발)조치되었음. 처벌 조치되고 실시계획인가를 주인(불법에 대한 처벌조치하고 관련법 협의 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허가)을 받고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 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청과 협의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질의

- ▶ 지난 1961년부터 현재까지 40년이 넘게 초등학교로 이용되어 온 부지가 있음.
현재 다른 공공기관 소유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해당 소유기관에서 부지를 학교시설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완료한다면 무상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소규모 초등학교 시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 ▶ 학교부지 현황

- 총면적 : 16,936m²
-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 완료 면적 : 11,098m²
-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 추가 면적 : 5,838m²



답변

- ☞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 있으며, 변경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본 사업은 개간사업으로 현재 임야로 이루어진 약 80,000m²의 토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이용하고자 함. 과수원의 특성상 과도한 절·성토는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현재의 지형을 이용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런 경우에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 답변

☞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개간 등)일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대지(학교용지)는 학교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 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으로 조성계획 결정전 받기로 되어있음. 조성계획 결정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에 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같은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들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 사업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운영중이며, 부지면적은 총 1,200만m²로 본 유원지 내에는 자동차경주장, 유원시설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06. 3월 유원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관련행정기관에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회 다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진행하고자 함.

- 1) '06. 3월 유원지 1,200만m²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후, 금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2) 유원지 1,200만m²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지역에서 즉, 1,200만m² 부지 내에 운영중인 자동차 경주장 부지면적이 267천m²로 이중 조경지역 일부를 자동차 경주장 지역에서 제쳐(103천m²)하여 자동차 경주장 부지면적이 164천m²로 변경되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 유원지 1,200만m² 부지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유원지내 자동차 경주장 부지면적을 변경하였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 ▶ 또한, 변경 인가·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2004년 10월 공원조성을 완료한 어린이공원임. 기존 건물 2층에 휴게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건축연면적증가)을 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함. 이때 기존 건물 2층에 휴게실을 증축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의 경우는 계획 결정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협의매수에 실패한 토지 등의 수용절차를 위해 확정측량을 하였을 경우 전체 면적 및 위치의 변화는 없으나 지번별 편입면적 변동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 2003년 모든 사업(폐기물처리시설)이 종료되었고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1) 변경사항 : 시설부지 면적변경($83,613\text{m}^2 \Rightarrow 86,610\text{m}^2$)
 - 2) 변경사유 : 사업시행 중 지형사정으로 인한 비탈면 등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확정측량 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정정

! 담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 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림.

- ▶ 공원 현황

- 공원조성계획 결정 : 1991.1.23, 공원면적 : 10,000m²(시설면적 3,000m², 녹지 면적 7,000m²)
 - '07. 7월 시설·녹지면적 변경없이 광장 8.12m²와 파고라 75m²를 야외무대 83.12m²로 변경 설치하고자 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나 변경사항으로 동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2)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규)를 받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할 경우 공원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가 신청을 받는 지역만 검토하여야 하는지?

! 담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대상면적이 됨.



질의

- ▶ 『농어촌정비법』 제6조제2항에 의해 개간대상지 선정 승인을 득하고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인가를 득해야만 시행할 수 있음.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득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수립, 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 있으며, 귀하게서 질의하신 『농어촌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간대상지 선정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질의

- ▶ 우리시에서는 도로개설(L=1.4km, B=35.5m) 계획이 있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할 예정임.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되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 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사전협의하는 제도로서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함.
- ☞ 따라서, 행정계획단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와 개발사업단계인 동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05. 4월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으며, '07. 5월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유 : 부지면적 5%이내의 변경)에 해당되어 사전협의를 득하지 않았으며, '07. 9월 실시계획 인가 변경 신청(사유 : 지적공사의 구역화정측량 결과에 의해 구역 경계의 오차 정정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이 된 사항으로 본 사업의 계획은 변경 없이 구역변경만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이며 사유지인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려고 함.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라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하고,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함.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농어촌정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 개간사업 시행인가 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개간사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조 및 제8조가 정한 농업 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현재 우리교육청에서 BTL(민간투자)사업으로 학교 개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개축공사를 시행계획 중에 학교시설의 면적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의 변경”건으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시청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임. 그런데 동 건에 대해 시청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的 협의 과정에서 시청으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의 시행 요구를 받았음.

- 1) 위 상황의 경우에 “행정계획에 의해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실시한 후 시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별도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열거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시설사업은 협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데도 협의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하여 재난 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는 제도로서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거쳐야 함.
- ☞ 따라서, 행정계획단계에서는 사전에 각종개발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지적정성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고, 개발사업단계에서는 사업 시행 전에 재해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인 재해예방 사항을 검토·협의하고 있음.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시설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

- ▶ 대상공원은 면적 176,000m²의 도시근린공원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행일('05.08.17)이전인 1992년 12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올해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은 개발사업에 해당되며 계획 결정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 조성계획 변경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개발사업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개발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계획 결정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도시근린 공원의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데 계획 결정 전과 실시계획 인가 전 2회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적용 시기는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 ('05.8.17)을 기준으로 하며, '05. 8. 17 이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포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08.2.22자 개정됨에 따라서, 개발사업단계의 경우 동일 사업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질의

▶ 버섯재배사 신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임.

-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역 31,248m²에 연면적 17,988m²의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부지조성이 완료된 농립지역에서 버섯재배사 신축으로 지목변경이 없어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아니라고 하나, 해당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건축물 건립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함. 본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건축법 제8조 규정이 정한 건축허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업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이며 사유지인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려고 함.

- 농어촌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을 하고,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함.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재해를 경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농어촌정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간대상지선정 신청, 개간사업 시행인가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개간사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조 및 제8조가 정한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을 수립,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변경수립지정을 하고자하는 면적이 대상규모(부지면적)가 9%정도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의 1항에 의하여 대상규모가 30%이하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증가되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자연녹지지역→일반 공업지역)를 수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행정계획단계 중 가목 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 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 지역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포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질의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기도 일원 집단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음. 이 취락들 중에 해제 당시 호수산정 누락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함.

구 분		당 초	금회변경	비 고
A취락	구역면적	90,000㎡	94,500㎡(증 4,500㎡)	대상부지 30%미만 증가
	용도지역	구역면적 증가분(4,500㎡)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		용도지역 변경

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중 비고 1에 의하여 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계획의 대상규모가 30% 미만의 규모 변경으로 검토대상이 아닌지, 또는 대상규모의 30%미만 변경이더라도 비고

2. 나의 용도지역변경 계획이므로 검토대상인지의 여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규모 단절 토지 [도로(중로2류 : 15m이상), 철도, 하천개수로(지방2급 하천이상)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3,000㎡미만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음.
(예) 소규모 단절 토지 1,000㎡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존용도지역(자연녹지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소규모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변경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인지의 여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행정계획단계 중 가목 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 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 지역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에 의거 (구)도시계획법 (1999.2.8 법률 제5898호)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임. 추진경위는 '00. 1. 13일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을 최초 결정한 후 당초 사업자가 워크아웃 됨에 따라 타 사업자에게 사업이 양도 되었으며, 시대적 여건변화로 인해 당초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08. 2. 25일 득하고 현재 (구)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질의요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당 사업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으로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에도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행 여부와 시행할 경우 근거 법은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용 시기는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을 기준으로 하며,

- ⇒ '05년 8월 17일 이후에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데 동법 시행령 별표1 행정계획 비고 2 가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4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재 해당 시군에서는 관리지역세분 중에 있음. 그리하여, 본 과업 대상지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함. 이러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행정계획 비고 2 나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행정계획단계 중 가목 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 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 지역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1. 행정계획단계 가목 4)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 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 지역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2. 개발사업단계 가목 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한함)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토록 하고 있으며, 단지, 주택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2003. 5)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음. 이를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 ☞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56조가 정한 개발행위 허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질의

- ▶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침수대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중이며 그 대책으로 배수펌프장에 대해 설계하고 있음. 이 배수펌프장을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청하고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계획,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각각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수행하면 되는지 여부? 면적은 5,000m² 이상임.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재해를 경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함.
- 행정계획단계에서는 사전에 각종 개발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지적정성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며, 개발사업단계에서는 사업 시행 전에 재해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인 재해예방 사항을 검토·협의하고 있음.
-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고, 동법 제 88조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 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행정계획단계 중 가목 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음.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재검토로 인하여 일부 노선들(약19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이 경우 대부분 소로2류(10m미만) 내지 3류(8m미만)이면서 각각의 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길이가 2km 미만이고, 그 합이 2km 이내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 00에 위치한 00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설계(대로3-146호선을 산업단지 경계에서 연장하여 국지도60호선에 접속)를 수행 중에 있음. 00지방산업단지는 '07년도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음.(대로3-146호선은 산업단지 경계까지 개통하여 운용중임. 3.7km, 95,490m²) 그리고 '07. 12월에 첨부도면과 같이 대로3-146호선을 연장하여 산업단지~국지도60호선 연결도로 도시계획선(파란색, 1.5km, 26,370 m²)을 결정하였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수행) 금번에 대안(빨간색, 1.1km, 17,952m²)으로 변경 예정임.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관련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행정계획단계 중 가목 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음.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재검토로 인하여 일부 노선들(약19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이 경우 대부분 소로2류(10m미만) 내지 3류(8m미만)이면서 각각의 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길이가 2km 미만이고, 그 합이 2km 이내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면적은 약 64,000m²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을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여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는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제2종일반주거지역(면적 : 약 60,000m²)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4개 노선을 폐지하고 중로 3개 노선을 변경 결정하며 소공원(면적 : 4,032m²)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위 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담당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해당하므로 자연재해대책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임. 타 사업의 경우 의제처리 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위 사항 역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

!

답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

▶ 기존 묘지공원(656,079m²)에 대하여 일부 공원조성사업이 추진(재)남서울공원묘원 되었으며, 2007년 6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당해 공원면적이 증가(202,260m²)되었음. 기 조성사업 시행자(남서울공원묘원)가 아닌 토지소유자(재)송파공원가 증가된 공원면적의 일부(약10,000m²)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변경 제안하려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가?

※ 참고사항

1. 공원면적 변경 결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하지 않았음.
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은 당해 도시공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의견을 받았음.



답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부지면적이 5,000m² 이상일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사업 승인 전 부지면적이 5,000m²이상일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5,000m²이상에 한하여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사항’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한함)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08. 9. 28일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대상규모(부지면적)가 5,000m² 이상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 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질의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관광숙박업)계획 승인을 득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였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 저류조 시설을 통한 재해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저류조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니 가족호텔 앞마당 주차장 인근에 계획하고 있어 숙박업소의 미관 저해는 물론 주차장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 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류조를 그대로 숙박시설 뒤쪽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함. 따라서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조를 그대로 뒤쪽으로 장소를 옮기는 사항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는 제도로서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함.

- ☞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행정계획단계로서 사전에 각종개발 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지적정성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또한, 개발행위는 개발사업단계로서 사업 시행 전에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인 재해예방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하여 심의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2.개발사업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비고 1호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면적개념의 경우 부지면적 5,000m², 선 개념의 경우 길이가 2km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비고 4호에 보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150,000m²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인 임야에 부지면적 8,000m², 건축면적(연면적) 1,500m²의 단독주택 건축사업을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인·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절차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⑤항의 의제처리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복합 민원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1) 개발행위허가를 상기와 같이 의제 처리하여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는지? 비고 1호의 5,000m² 이상이면 하는지? 비고 4호의 150,000m² 이상이면 하는지?
- 2) 개발행위허가를 상기와 같이 의제처리하지 않고 단독으로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대상면적은 10,000m² 이상임] 또한 비고 1호에는 5,000m²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3) 예를 들어 공장설립 등 각종사업을 의제 처리하여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비고 4호의 150,000m² 이상이면 하는지?

!

답변

- ☞ 개별법령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다만,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대상규모는 부지면적 5,000m² 이상이면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하고자 할 시에 의제되는 대상 중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행위 허가 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10,000m² 이상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5,000m²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개발행위(저지대농지성토)와 같은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기준이 10,000 m² 이상인지 5,000m² 이상인지?
- ▶ 만약 “A”씨가 몇몇 지주들과 같이 1건으로 개발행위(저지대농지성토)신청을 하였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 기준 내), 마찬가지로 인접한 땅의 “B”씨가 몇몇 지주들과 같이 1건으로 개발행위신청을(사전재해영향성검토 기준 내)할 경우 각각의 건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인접하여 있으므로 두건을 합치면 검토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되는지?

!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대상규모는 부지면적 5,000m² 이상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1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규모는 10,000m² 이상이 됨.

- ☞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재해영향을 받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범위에 해당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대상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내에 방재시설(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을 중복결정(공원, 저류시설)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면적 : 319,642m²
- 공원부지 내 저류시설 면적 : 10,530m²

답변

-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현재 본 사업의 추진현황은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고시하고, 세부설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음. 개정된 시행령에 보면 행정계획 당시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수립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하도록 하고 있음. 의문사항은 행정계획의 준수기준이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전인데 ‘농어촌정비법 제28조’ 개발계획의 내용이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고 주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어 본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마을정비구역 고시 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을 수가 없었음. 이에 본 사업의 추진 시 행정계획 당시 협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을 개발계획 협의 단계에서 같이 협의해야 하는지? 행정계획의 내용은 제외하고 개발계획의 내용을 협의하면 되는지? 또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는 앞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 계획의 내용적 범위가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개발계획에서만 협의해도 되는지?

!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을 수립·화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재해를 경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 따라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동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한함)을 수립하는 경우 각각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사전재해영향 검토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

- 1)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30% 이상 증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 2)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1997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연구소)로 승인 받았으며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경과조치 받았으며 금회 연구소를 물류창고로 계획하여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자 함. 변경내용은 당초 경과조치 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확장(30% 이상 증가)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연구소를 물류창고로 계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용도 지역 변경은 없음)상기와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및 제2종지구 단위계획수립 시 사전재해영향검토 대상인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행정계획단계 중 가목 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 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 지역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 하는 경우[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와 도시 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질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 인가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이전('08.09.26)에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 신청 ('08.8.22)을 하였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답변

- ⇒ '09.9.28일(시행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 조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2.개발계획. (가)목 14호]에 의거 사업의 시행 인가 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 따라서, 귀도에서 질의하신 주택재개발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는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개정 이전인 '08.8.22일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05.3.21)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하여, - 스포츠타운 내 일부 부지(8,970m²)에 테니스장 건립하고자 세부시설 변경결정 (○○시. '09.4.13)을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인가?



답변

☞ 자연재해대책법에 시행령 제6조에 제1항 별표1. 2호(개발계획)의 비고1호 규정에 의거 - 금번 ‘테니스장 건립공사’는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당초 부지면적의 증가는 없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질의

▶ 지자체 공원에 관한 사전재해 개발단계를 수행 중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차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계획이 수립된다고 함. 이와 같이 두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실시설계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협의해도 상관없는지?



답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사업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임.
☞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2. 개발사업 비고2 "같은 지역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에는 계획의 내용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답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농어촌 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계획 및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 계획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54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자 한다면 행정계획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

▶ 묘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을 협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은 행정계획 단계로 부지면적이 30%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공원 조성계획 결정은 개발계획 단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결정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통보받았음.

질의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때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도 되는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2.개발사업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은 계획 결정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임.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2.개발사업 비고2에 의하면 같은 지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금번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선행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할 것임.



질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협의대상 중 개발사업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으로 되어 있음. 정비사업이라 함은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뉘어 짐. 가와 다는 사전재해대상이 아니라 판단이 됨.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인데 단독주택지역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둘째,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음. 만약, 아파트로 재건축하는데 정비기반시설인 우수계획이 기존우수관로가 아닌 계획우수관로 신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2.개발사업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질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에 의거 1,299㎡에 대해 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하려는 경우임.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5,000㎡미만 일지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1. 행정계획 비고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임.



질의

- ▶ 1. 기 협의완료(2008. 10)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계획내용에 포함된 근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금회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였으므로, 금회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시 행정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진행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2.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행정계획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은 개발사업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행정계획) 협의를 이행하였다 해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개발사업) 대상임.
- 참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질의

▶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시 도시관리계획(도축장) 결정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항(행정계획)에 동법 제26조는 포함되지 않고 동법 제30조가 포함되어 있음. 비교의 내용을 보면 가목4) 30조의 해당사항 중 부지면적 5,000m²이상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으로 대어 있는데... 이법령을 제3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거하여 5,000m²를 초과하면 협의대상인지?



답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1. 행정계획 비고2, “다”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 5,000m²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협의 대상임.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입안의 제안’임.



질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 시 현재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일반상업지역 혼재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



답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1. 행정계획. 비고2의 “나”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의 변경)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혼재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경우 또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분야



질의

- ▶ 공장설립의 경우, 기존부지 및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업체가 들어와도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 및 부지 조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 ▶ 건축물 및 부지의 변경 없이 업종변경만 있는 상황에서도 대상이 되는지?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부지 면적 10,000m² 이상에 한하여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를 의제처리로 승인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대상규모(부지면적)가 15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질의1)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건축면적 약50평을 증축 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참고로 50평 증축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조에 해당이 되지 않아 공장설립 변경승인 대상도 아님. 이러한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 질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공장설립 변경승인 및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협의대상이 되는지?
- ▶ 질의3)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의 증·감이 없고 단순한 대표자변경 및 업종변경일 경우에도 협의대상이 되는지?
- ▶ 질의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및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답변1, 2, 3)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10,000m² 이상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 있으며,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 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 답변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 2005. 8. 17일 이전 공장설립 승인을 득 하였으나,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되지 않은 상태로 2006. 2월 명의변경으로 인해 공장설립 승인 변경신청을 한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m²이상인 경우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은 공장건축면적 500m²미만인 경우라도 제1항에 의한 승인을 득 할 수 있는데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500m² 미만의 소기업이라도 신청부지가 공장용지가 아닌 전, 단, 임야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장건축면적이 500m²미만인 경우도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면허·승인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상규모(부지면적)가 1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부지면적 및 건축변경 없이 업종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공장 변경 승인대상으로서 이러한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 부지면적의 변경이 없고 건축면적만 증가하는 경우로 공장건축의 층수만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되나 기타 법에 의하여 공장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공업 지역 등 지역이나 규모 또는 신·증축 구분 없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모든 공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 준공업지역에 지목이 “답”인 4,200m²의 부지를 놓지전용(형질변경)을 받아 연면적 2,000m²의 공장을 지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10,000m² 이상인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본사는 소화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기존건물 3개동을 보유하고 있음. 그중 사무실 및 식당으로 사용되는 1개동을 철거하고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3층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함. 부지의 면적은 변동 없고(5,016m²) 기존 제조 시설의 면적 1,434.5m²에서 441.72m²가 증가된 1,876.22m²로 증가되고, 기존부대 시설의 면적 645.22m²에서 253.17m²가 증가된 898.39m²로 건축면적(제조시설의 증가)의 변경에 따른 공장증설 승인을 득하고자 할 때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대상인지?

!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시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10,000m² 이상인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공장부지 및 건축면적의 변경이 기존공장 면적의 20%이상 증가되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 그런데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나,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항은 제외라하는데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은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부지면적 증가 없는 건축면적의 변경이나 부대시설 변경 및 업종변경 등과 같은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질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시 신청면적 13,000m², 도로점용 700m², 구거점용 300m²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시 사업부지 신청면적, 도로점용, 구거점용을 포함한 14,000m²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설립 신청면적 13,000m²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시 대상면적(규모)은 공장설립 승인 신청 면적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기반시설(도로, 공원, 상하수도시설 등) 설치와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준공된 산업 단지로서 금번에 유치 업종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동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변경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자 3개 공장(전체 면적 19,000m² 정도)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였음. 그런데 타 부서 협의 중 표고가 높은 쪽의 면적을 감소하라고 하여 최종 승인 전에 취하를 하게 되었으며, 다시 면적을 축소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사업부지의 면적은 약4,000m²) 감소한 15,000m²이며, 부지 면적 감소 외엔 변경사항이 없음)

!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시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10,000㎡ 이상인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부지면적 19,000㎡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친 경우 면적 축소(15,000㎡)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임.

- 1) 당초 창고나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이 완료된 경우 동일부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면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 당초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역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3) 개별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절·성토가 없는 현황일 때 공장설립이나 개간 사업 등을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절·성토가 없는 이유로 협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4) 한필지로 공장허가를 득한 사항인데 여러 필지로 나누어 공장설립 승인을 별개로 받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답변

- ☞ 1), 2) 개발사업단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됨. 따라서 개발사업단계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8조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수립(개간)의 경우 개별 법령에 의거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역에서 별도의 부지조성 사업 없이 승인, 수립되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됨.
-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개발로 인해 당해 부지의 입지적인 여건이 침수, 매몰, 붕괴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절·성토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 4) 공장용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부지에 여러 개의 독립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질의

- ▶ 공장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허가관청에 문의를 해보니 공장 건축면적 500m² 이상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부지는 일반 농지이며, 절·성토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단순히 건물 면적이 500m² 이상이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시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10,000m² 이상인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공장설립 승인 시(부지면적 26,000m²)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득하였음. 그러나 당초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했던 부지 중 일부(14,000m²)가 고속 도로 개설면적에 편입이 되어 부득이하게 인접한 부지로 편입된 면적만큼 (14,000m²) 옮겨 공장설립 변경을 득하고자 할 때 총부지 면적이 26,000m²으로 동일하므로 30%미만의 변경사항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인접하여 옮기는 변경 부지 14,000m²을 변경사항으로 보아 30%이상의 변경사항으로 인정하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시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10,000\text{m}^2$ 이상인 경우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다만, 공장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text{m}^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상규모는 기준 승인받았던 면적의 30% 증가에 한하며, 추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 ▶ 2005년 6월 착공하여 시공 중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임. 시행주무관청은 건설교통부이며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사업명은 서수원 ~ 오산 ~ 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며, 총연장은 38.5km, 4~6차로 ($B=20.0\text{m} \sim 30.6\text{m}$)이나 건설교통부의 고속도로 노선방침에 따라 일부간 ($L=3.7\text{km}$)의 선형이 변경되고, 차로수도 4차로에서 8차로로 늘어나며, 중간에 IC영업소가 신설되는 상황임. 변경구간은 경기도 화성시 관내이며 교량이 추가 되는 경우는 없으나, 당초 교량의 폭이 증가($20.0\text{m} \rightarrow 30.6\text{m}$)하고 변경구간에는 IC가 1개소 있음.
- ▶ 자연재해대책법은 2005. 8. 17 개정되었으나 본 사업(개발사업)은 법령 개정 전 이미 공사착수(2005.6.29) 하였음. 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협의대상일 경우 협의기관은 어디인지?

!

답변

- ☞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8.17) 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다만, '05. 8. 17일 이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 협의기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면 됨.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내용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단서 조항인 주거지역 안에서 10만m² 이하의 사업으로 실시 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함. 이러한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가 정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그러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가 정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주거지역 내에서 10만m²이하의 규모로 시행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바로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주거지역 내 10만m²이하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절차 생략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제되지 않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우수유출이나 토사유출을 유발하는 부지조성 계획이 제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위험에 대한 영향성 검토가 필요함.
- ☞ 따라서, 부지면적 5,000m²이상인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가 정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동조 제6항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재해영향 검토를 받아야 함.



질의

- ▶ 대상사업은 「월성 전원단지 개발계획」으로 개발사업은 1976년 기승인된 사항으로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사업대상지내 부분 변경 됨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임.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1976년 ~ 2009년 12월
 - 사업면적 : 4,134,393m²
- ▶ 금회 사업계획은 기존의 「월성 전원단지 개발계획」 사업부지내 녹지지역 일부를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발전소 부대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총 사업면적 : 4,134,393m² (변경없음)
 - 녹지지역 : 573,937m² → 565,475m² (8,462m² 감소)
 - 공업지역 : 1,418,384m² → 1,426,846m² (8,462m² 증가)
- ▶ 이에 금회 사업계획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사업인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만,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질의

▶ 이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97년)되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수차례 진행된 지역이지만 의제처리 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단지에서 금번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실시하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세분 :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므로 현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음) 결정을 의제처리 받으려고 함. 이러한 경우 기존 계획의 변경으로 보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이 새로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참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경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질의

1. 최종면적 5,000미만, 증가율 30%미만인 경우 협의대상 여부
(예 : 공장 최초 승인 $4,000\text{m}^2 + \text{변경면적 } 800\text{m}^2 = 4,800\text{m}^2$ 인 경우)
2. 최종 면적 5,000미만, 증가율 30%이상인 경우 협의대상 여부
(예 : 공장 최초 승인 $2,000\text{m}^2 + \text{변경면적 } 2,000\text{m}^2 = 4,000\text{m}^2$ 인 경우)
3. 최종 면적 5,000이상, 증가율 30%미만인 경우 협의대상 여부
(예 : 공장 최초 승인 $4,900\text{m}^2 + \text{변경면적 } 1,225\text{m}^2 = 6,900\text{m}^2$ 인 경우)
4. 최종 면적 5,000이상, 증가율 30%이상인 경우 협의대상 여부
(예 : 공장 최초 승인 $4,900\text{m}^2 + \text{변경면적 } 1,519\text{m}^2 = 6,419\text{m}^2$ 인 경우)
5. 변경 허가 ·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변경 허가 · 승인의 범위가 승인 중인 변경사항인지, 사업(준공) 완료 후 사업 변경(증설)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5,000\text{m}^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공장 증설 및 변경 승인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증설(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 증설(변경)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현재 부지면적 $3,345\text{m}^2$, 제조시설 520m^2 , 부대시설 482m^2 인 공장이 부지면적 $1,473\text{m}^2$ 가 증가하고, 제조시설은 변동 없으며, 부대시설 건축면적 $1,219\text{m}^2$ 를 증설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공장 증설 및 변경 승인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증설(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 증설(변경)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1. 행정계획,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 개발사업,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 ▶ 농공단지 지정 시 행정계획 단계와 농공단지실시계획 시 개발사업 단계에 받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 시에는 농공단지 절차가 단지를 지정하고 그 후 다시 실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정 2008.6.5)이 제정되어 농공단지 계획 시 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을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가 되었음. 그렇다면 기존에는 행정계획, 개발사업 단계에서 따로 따로 받았었는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 이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꺼번에 행정계획, 개발사업 단계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면 되는지?

!

답변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농공단지 지정 및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 계획단계인 지구 지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사업단계인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재해영향을 검토하여 자연재해대책 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이 9,000m² 정도임. 금번 2,000m²를 증설하여 총 면적이 11,000m² 정도 됨. 부지면적은 10,000m² 이상이나 변경면적은 30%미만일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이 10,000m²이상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아니면, 기준이 변경면적 30%미만이기 때문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닌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2.개발계획 (나)의 4호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며, 별표1의 2.개발계획. 비고1의 규정에 의하면, "... 다만,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금번사업의 경우는 공장설립 승인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 후 면적은 10,000m²가 넘게 되나 증가되는 대상규모(부지면적)는 22.2%로서 30% 미만으로 증가되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 또한, 반대의 경우, 증가된 면적이 30% 이상이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면적인 10,000m² 이하일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라 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변경승인의 경우, ①증가되는 면적이 30% 이상이고, ②증가 후 면적이 10,000m² 이상이 되는 경우에,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할 때에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임.



질의

-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군 부지 내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 ▶ 군 특성상 주둔지의 개발사실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사실이 없더라도 이를 개발로 인정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 ▶ 만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해야 할 경우 현재 고시된 이후 어느 시점에 실시해야 하는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에 시행령 제6조에 제1항 별표1. 1호(행정계획) (나)목 7의 규정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임.
- ☞ 자체체와 협의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금번 개발사업에 대한 '확정·허가' 등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질의

- ▶ 창고로 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된 부지 약14,000m²를 동일인이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고, 주변 부지 3,000m²를 균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 사업장위치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일원
 - 나. 사업면적 : 당초 약 14,000제곱미터→금회: 17,000제곱미터를 균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 추가
 - 다. 허가내용 : 당초 : 창고, 금회 : 창고부지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 균생부지 추가
 - 라. 사업시행자 : 임 지순(변동없음)
 - 마. 기타사항 : 창고부지는 부지정지 공사가 대부분 수행된 상태임.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시행령 제6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해 협의대상 제외인지?

!

답변

- ☞ 질의하신 내용은 창고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 중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추가로 균린생활시설을 추가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서
 - 용도변경(창고→공장)에 따른 관련규정이 제시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움.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대상규모가 10,000m²이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임.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 3호의 규정은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외 규정으로 본 질의와 같이 창고부지 조성 중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질의

- ▶ 산업단지특례법 대상 사업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 및 개발사업단계 2가지를 모두 실시해야하는지?

통상 산업단지특례법 대상 사업은 개발사업단계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재해대책법 및 산업단지특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답변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특례법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협의대상(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

- ▶ 공장설립 승인신청 예정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일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이거 공장설립승인전 동법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부서로 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협의(인가)를 받아야 함.

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사업』 인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경우 신청한 공장부지 면적이 7,500m²일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사업으로 볼 경우 10,000 m²미만이므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대상이 아니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사업으로 볼 경우에는 5,000m²이상에 해당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업임. 이와 같이 법률상 중복되는 사업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이 되는지?

!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협의하여
의제하는 경우라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라면 대상규모가 5,000m² 이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임.

! 질의

- ▶ 기존공장이 9,624m²이며 4,201m²가 증설되어 총 13,825m²가 됨. 이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2. 개발계획, 비고1)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m²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10,000m²) 이상이거나...”,
“다만,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금번사업의 경우 당초 면적(9,624m²)에 비해 30% 이상(43.6%) 증가되고,
증설 후 부지면적은 13,825m²가 되어 10,000m²를 넘게 되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임.

3. 교통시설의 건설 분야



질의

- ▶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위해 지자체 협의 중에 있으며, 금번 변경사항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이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사항[국토해양부장관 승인(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우]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길이 2km 이상인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철도건설 사업관련으로 시행하는 ○○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구간 중 ○○선 사업실시계획이 '05. 4. 16일자로 승인되었음.(국토부 고시) 동 승인 구간에 전기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동사업구간의 추가 전기설비 규모

- 변전소(4층, 층고 : 20m, 편입면적 : 3000평방미터) 1개소
- 구분소(2층, 층고 : 12m, 편입면적 : 600평방미터) 1개소
- 보조급전구분소(2층, 층고 : 12m, 편입면적 : 600평방미터) 4개소
- 송전선로(지중 2.7km)



답변

- ☞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시·군에서 발주하는 군도, 시도, 지방도의 도로공사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 지방도, 시·도, 군·도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에 해당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를 할 경우 공사 시행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축, 도로의 재 포장, 보수 등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제외되는데, 만약 도로의 선형개량(굴곡부)공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 ▶ 그리고,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 않는 비법정도로의 도로공사를 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

-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는 신설·개축에 한하여 도로공사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도로법』 제23조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 법 제23조의 규정에는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로공사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로의 재포장이나 규모의 관계없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군수는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기초자료 단계에서 과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지?

담변

-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경우 신설·개축(2km 이상)에 한하여 공사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아울러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은 도로의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위험지구, 하천횡단 등 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계획으로 판단됨.

질의

- ▶ 농어촌도로 공사기간이 3~4년간 장기화 되고 예산이 당해연도에 100% 확보가 어려워 총괄계약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동일)계속 공사의 경우에도 매년 다음연도의 예산계상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고 있음.
- ▶ 상기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05. 8. 17) 개정 이전에 총괄 계약되어 사업이 착수된 동일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 대상이 될 경우 앞으로도 매년 동일사업에 대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담변

- ☞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의 경우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이전에 전체사업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중인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참고로 전체사업구간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쳤다면, 매년 동일 사업구간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중복하여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에서 정한 개발사업 중 교통시설의 건설사업 중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협의 시기는 공사시행 전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 정한 공사시행 전은 공사를 위한 제반 행정준비를 마친 실시설계 완료 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기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의 공사시행 전 단계에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본 사업은 ○○공항 SKY PARK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항 국제선 청사 전면 주차장 및 녹지시설에 부지면적 194,874m²의 지하5층, 지상9층 규모인 ○○ 국제공항 SKY PARK를 조성하는 사업임. 『항공법』 제154조에 따라 항공 안전본부에서 ○○지방항공청으로 협의 및 승인권이 위임됨. 동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동법 제94조에 따른 사업시행허가 요청 중에 있음. 본 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아니면 부지면적 15만m²이상이므로 지방재해 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

- ☞ 『항공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골프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 골프장 시설계획과 별도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사도법』에 의해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며, 개설 후 일부를 군도로 기부체납하고자 함.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

▶ '08. 2. 22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여부에 대한?

▶ 인접한 지역에 1.2km, 1.25km의 두개의 도로에 대한 사항임. 이중 1개소는 '07. 12월 법개정 이전에 도로계획결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1개소는 현재 도로계획결정이 진행 중인 상태임. 즉 1개소는 법개정 이전에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1개소는 법개정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임. 이건에 대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 시 다음 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1. 인근사업지역이므로 법개정과 관계없이 두개의 도로의 합이 2km이상이므로 두개의 도로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한다.
2. 법개정이전에 행정단계가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현재 행정단계를 거치고 있는 2km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3. 두개의 도로가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같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도로가 행정단계 진행 중이고 각각의 도로이며, 2km미만이므로 개발 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획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도로법 제24조가 정한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재해 영향을 받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범위에 해당된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 ○○도에서 시행하는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04년 6월에 공사계약 체결 및 착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차로 수화장이 요구되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음.
- ▶ 변경내용
 - 당초 : 5.26km, 4차로, 변경 : 2.52km, 6차로
(※ 변경개발사업 대상 규모가 30% 미만임.)
- ▶ 이러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 답변

- ☞ 도로법 제23조가 정한 도로공사의 경우 신설 및 개축에 한하여 공사시행 전에 자연 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참고로 도로, 철도, 하천과 같이 사업의 규모를 선 개념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2k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 해상교량 2.11km를 포함하여 총연장 3.44km(시점측 토공구간 0.81km, 종점측 토공구간 0.52km)의 왕복 2차로(폭 11.5m~13.8m) 도로사업인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육상구간의 도로 연장이 1.33km로 2km 미만에 해당되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하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 ⇒ 도로법 제25조가 정한 도로공사의 경우(신설 및 개축에 한함) 공사시행 전에 2k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 대해 문의 드림. 당초 실시설계(L=15.7km)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실시 이전인 2003년에 완료되었음. 그러나 2007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구간(6.0km)에 대하여 보완설계를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금회 일부구간 보완설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기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의 공사시행 전 단계에서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음.

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분야



질의

-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소하천1개소 연장 1.5km)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본 용역이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질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를 보면 개발사업단계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분야 중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관한 것만 있고, 지방2급이나 국가하천 시행계획에 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지?



답변

- ☞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의 경우 개발사업단계인 하천정비시행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 본 사업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임. 기존의 폐교 및 정수장을 개발하여 주민 복리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서 산지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되므로 근거법에 의한 대상사업은 아닌 것 같으나 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써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근거가 있는지?



답변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행정계획으로 2003년에 141개소(198,328km)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를 득한 상태에서 금회 추가 및 변경으로 1개소 폐지, 4개소가 신규 추가되어 144개소이고, 변경 연장은 201,250km로 되었음.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행정계획 변경 시 면적의 30% 이상 변경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 및 연장으로 볼 때 1~2%로 경미함. 다만 예전 계획수립 후 행정계획 사업지가 추가되었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

-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승인 받는 경우에는 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5. 수자원 및 해양개발 분야



질의

- ▶ 면적이 약35,000m²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본 사업은 ○○도 북서 전면해상(○○항 항계 내)의 현재 운영중인 연안여객선 항로를 준설하는 사업(수심 DL(-)14m, 준설량 24,991천m³)으로서 해양 준설사업 (항로준설)으로 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 검토되는 홍수, 토사유출, 사면안정성에 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은 본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사업은 관리청인 ○○지방해양항만청에서 1995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으로, 2005년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현재의 사업자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완료된 사업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남기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의 특성과 추진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본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 ☞ 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로서 『항만법』 제10조가 정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해상(바다)에서 준설사업을 하는 경우,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영향은 없으나 준설량에 따라 수심의 변동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조류와 파랑의 진행방향이 변경되어 인근 해안에 침식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시 준설에 따른 조류 및 파랑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근 해안지역 침식에 대한 검토·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본 사업은 ○○시 북서 전면해상(인천항 항계 내)의 현재 운영중인 연안여객선 항로를 준설하는 사업(수심 DL(-)14m, 준설량 24,991천m³)으로서 사업의 개요는 『첨부』와 같음. 해양 준설사업(항로준설)으로 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 행해지는 홍수, 토사유출, 사면안정성에 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은 본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사업은 관리청인 ○○지방해양항만청에서 1995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으로, 2005년에 비 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현재의 사업자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완료된 사업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넘기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의 특성과 추진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본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 ⇒ 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로서 항만법 제10조가 정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해상(바다)에서 준설사업을 하는 경우,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영향은 없으나, 준설량에 따라 수심의 변동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조류와 파랑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인근 해안에 침식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시 준설에 따른 조류 및 파랑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근 해안지역 침식에 대한 검토·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현재 ○○시 일원에 위치한 “○○ ~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임.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로의 계획 선형에 의해 흑산소하천에 대한 유로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금번 유로 변경 시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과 더불어 해당 유로 변경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지방국토관리청과 ○○시 간에 해당 변경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해 주기로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변경과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소하천 실시설계” 부분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아래와 같은 사항일 경우에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변경 내용

- 하천명 : 흑산천(소하천), 고시유로연장 : 770m
- 유로변경대상구간 : 200m, 유로변경구간 : 163m

!

답변

- ⇒ 소하천정비법 제6조가 정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전, 제8조가 정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전에 각각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거나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 또는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 ▶ ○○지구 해안도로(L=970m)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는 중 해안도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참고로, 대상지역은 해일위험 지구가 아님.
- ▶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실무지침서, 2007.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p. 26”의 본문 내용을 참고한 결과 “개발사업의 범위 중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또는 길이 2km 이상의 규모를 말한다.(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 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동법 제25조의 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록되어 있음.

!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재해를 경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가 정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실시 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하천과 같이 사업의 규모를 선 개념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2k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는 현재 ○○항(북항)과 항만지역 전면의 공유수면으로, 행정계획단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국계법상 도시관리계획 관련) 협의는 완료하였음. 사업의 진행에 따라 개발사업단계의 협의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검토 결과
1. 사업근거법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상 협의 대상사업이 아니며,
 2. 사업시행에 따라 향후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로는 다음과 같은 인허가 과정이 필요하나, 모두 사업근거법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제 처리되고 있음.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이상과 같이 본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하여 나름대로 검토하였으나, 주무기관의 견해를 구하고자 함.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유수면 매립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질의

- ▶ 본 대상지는 공유수면 매립예정지로 대상지 외 지역은 이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고시 되어있으며, 추가로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등)에 의하여 해당 대상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본 대상지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하여 이미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을 변경(매립계획의 추가)하는 때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 ('07. 11 소방방재청) 2.2 대상별 사업절차 및 협의요청 시기 중 2.2.11 공유수면매립 분야 항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하여 이미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을 변경(매립계획의 추가)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매립 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및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 ⇒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 ⇒ 다만,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가 정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 경우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가 정한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 소하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과 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이 병행하여 수행되므로 서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함. 그래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행정계획) 작성 시 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 시 수행하여야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지?
- ▶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별단지를 포함한 단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 계획단계로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는 도시개발법 제2조에 의해 실시하여 완료한 상태임. 단지 내 개별단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개별단지를 포함한 대단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의제처리를 할 수 있는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의 “같은 지역에서 별표 1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내용에 적용이 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재해를 경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행정계획단계인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사전에 각종개발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입지의 적정성 등 재해예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및 협의를 하며,
 - 개발사업단계인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 당해 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저감대책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검토 및 협의를 하고 있음.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에 의거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 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귀하게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된 단지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경과조치) 00댐 건설사업에 도로개설사업(L=20km, 면적 : 댐 사업대비 30%미만)을 포함하여(기본·실시계획 변경고시) 시행할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행정계획, 개발사업 협의대상? 당초 댐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고시에 도로개설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음.
- ▶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개별법에 따라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정계획, 개발사업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 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수립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공사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6. 산지의 개발 및 골재채취 분야



질의

▶ 공설장사시설을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용역을 2005. 6월부터 진행하여 현재 용역이 완료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이 됨.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용역을 진행 하였어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입안확정(안)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05. 8. 17)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자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됨.



질의

▶ 본 사업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신청면적 30,693m²에서 총 골재채취량 58,035m³(모래, 자갈)에 따른 골재(육상골재)채취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골재채취량 30,000m³이상인 경우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경우 육상골재 채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 개발사업 - 사(6)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 지역진홍사업계획이 실무지침서 대상별 사업절차 및 협의요청시기에 중앙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시 소방방재청으로 협의 요청해야 하는지?



답변

- ☞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홍사업계획의 확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일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확정권자일 경우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개발사업 -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8)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에서의 협의대상이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라고 한정되어있으나 산지개발이외의 농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할 때에도 채광계획인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 채광계획인가와 관련법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개발행위 등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 개발사업-가-(1)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누가 판단하여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며,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시 의제처리 되는 개발행위 허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심의대상은 같은 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대상은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 ▶ 채광계획 인가 신청 시 제출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상에서는 지형, 강우량, 태풍 등에 의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할 수 있는 자료로 인용할 수 있으나, 해상(바다)에서 광물(규사, 희유원소 등)들에 대하여는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답변

- ☞ 해상(바다)에서 광물을 채광 하는 경우 채취량에 따라 수심의 변동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조류와 파랑의 진행방향이 변경되어 인근 해안에 침식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시 광물채취에 따른 조류 및 파랑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근 해안지역 침식에 대한 검토·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 이번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비고 1의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에 대해
- ▶ 광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 시 광구단위 면적으로 인가를 하고 있음. 광구가 전 단위 광구일 경우 그 면적은 270ha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임. 소단위 광구라고 하더라도 수십ha 이상임. 하지만 갭도굴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광물을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훼손코자 하는 면적은 수천 m²에서 10만 m²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경우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광구 단위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훼손되는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함. 광구단위 면적으로 볼 경우 광업법의 채광계획인가는 이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변경 사항이 없게 됨. 법개정 이전에는 사업대상면적을 광구단위 면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훼손면적의 변화가 전혀 없는 변경인가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왔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개발사업의 부지면적”的 개념에 대하여,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획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개발 사업 비고 1의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라 함은 개별 법령에 따라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하며, 간도굴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광물을 채광하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실제 훼손되는 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 공익사업(도로)으로 인해 묘지이장을 하고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묘지설치 허가 신청을 하려 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 종중묘지 8기 240m²

!**답변**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묘지 설치 허가 전에 부지면적 5,0000m² 이상인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2008년 9월 26일자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협의대상이 개정된바, 별표1의 제2호 개발계획 사목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의 7)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가 새로이 개정되어(기존토사에서 토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인지한 바, 금회 토석채취개발을 함에 있어서 2008년 9월 26일 이전에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 완료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도 협의하였음.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08. 9. 28 이후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됨.

- ☞ 따라서 '08. 9. 28일 이전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토사채취 제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질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행 이전에 채광 계획인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여 오던 중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후 다시 같은 지번 내에서 신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

- ▶ 본 사업지구는 최초허가 '83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설묘지를 운영하던 사업장으로 시·군 승인면적 120,000m²와 금번 증설면적 22,000m²를 계획함으로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여부? (기허가지와 증설면적은 제2종지구 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으로 수립된 지역임)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비교2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는 대상규모가 5,000m² 이상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다만, 기존 허가면적(120,000m²)외에 증설허가(22,000m²)를 받는 경우라면 증가되는 대상규모가 30% 미만이고 45,000m² 미만으로서 협의대상이 아님.



질의

- ▶ 채석단지 지정을 받고자 소방방재청과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08.9)된 지역(A)과 함께, 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연접지역(B)을 합하여 채석단지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A) 재해영향평가 기 협의 완료 면적 : 490,157m²
 - (B) 금번 채석단지 지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연접지역 면적 : 33,998m²
→ (B)지역은 '97~'07년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 지역이며, 재해영향평가 기준면적(30만m²) 이하로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었음.



답변

- ☞ 기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지역(490,157m²)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이행 여부
⇒ 자연재해대책법에 시행령 제6조에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를 받은 지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 재해영향평가가 협의되지 않았으나 기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였고 금번 채석단지에 추가하고자 하는 연접면적(33,998m²)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이행 여부
⇒ 자연재해대책법에 시행령 제6조에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질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를 끌재채취법 23조 규정에 따라 협의처리 시 육상끌재채취량이 개발행위 심의 대상인 3만m²를 초과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일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2. 개발사업의 규정에 의거 끌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끌재채취(하천끌재에 한함) 사업계획 승인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 또한, 육상끌재를 채취 시 끌재채취법 23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를 협의 의제할 경우에는 대상규모가 150,000m² 미만이라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질의

▶ ‘○○시 ○○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행정계획 단계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가?

답변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않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사업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인 경우 계획 수립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7.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분야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사. 관광 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항을 보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관광지 지정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다만,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질의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림.

- 당초승인일 : 2004. 10. 30

- 사업계획변경내용

- 대지면적 감) $19m^2$, · 건축면적 감) $201.52m^2$, · 객실 수 : 감) 31실
 - 객실용도변경 : 콘도미니엄 중) $1,144.55m^2$, · 관광호텔 감) $2,350.59m^2$
- 상기와 같이 대지 및 건축면적과 객실 수가 감소하고, 객실에 대한 용도변경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 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2$ 이상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온천개발계획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276,469\text{m}^2$ → $188,815\text{m}^2$ / $감87,654\text{m}^2$)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온천법』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text{m}^2$ 이상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1998년도 관광단지 지정, 1999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와 협의대상이라면 검토협의 회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조성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임)



답변

⇒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text{m}^2$ 이상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현재 온천을 개발하고자 시추를 하여 관할관청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득한 곳으로 금번에 『온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득하고자 함.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 『온천법』 제5조에 따라 승인 받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제정 이전인 2000년도에 『온천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부지면적이 변경 없는 상태에서 온천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 『온천법』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관광사업계획 승인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부지조성이 아닌 단순 크루즈선을 이용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 설치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동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별표1” 아 2)항 규정에 의거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관광사업을 위하여 부지 조성이 아닌 단순 크루즈선을 이용 바다에 수상호텔을 조성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관광진흥법』 제15조가 정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바다위에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수상호텔을 설치하는 경우, 태풍이나 폭풍, 해일 등에 의하여 동 시설이 전복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풍 등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함.



질의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에 의한 농어촌관광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중임. 동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행됨. 이런 경우 본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이 아니나,
- ⇒ 농어촌정비법 제27조, 제31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수립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고 있음.



질의

▶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의해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음. 관광단지 지정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재해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런 경우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승인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생략하고 재해영향평가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는 제도로서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거쳐야 함.
- ⇒ 따라서,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행정계획단계로서 사전에 각종개발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지적정성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 관광 진흥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를 지정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며,

- ⇒ 관광단지조성계획은 개발사업단계로서 사업 시행 전에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인 재해예방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함.
 - 다만,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 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질의

▶ 사업개요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도입 전에 승인을 받아 운영중인 00골프장의 증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건임.
- 기정 사업면적 : 1,500,000m²(18홀 골프장, 1993년 준공 후 운영중)
- 추가되는 사업면적 : 110,000m²(퍼팅연습장, 콘도미니엄 등)
- 변경 후 사업면적 : 1,610,000m²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범위 법적 기준

-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08. 2. 22)에 의하면 “개발사업 범위 중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m²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질의

- 본 사업의 추가되는 면적이 기 허가받은 면적의 7.3% 증가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체육 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개발사업의 최소 면적을 5,000m²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 기허가 받은 면적을 제외하고 110,000m²인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08. 2. 22자로 개정되었으며, 개발사업 중 변경 허가 ·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부지면적이 7.3% 증가되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당해 개발사업에 따라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체적인 검토 ·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95년 3월에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10,000,000m² 지정을 받았으며, ’96년 1월에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임. 관광단지의 구역계 변경없이 전체면적 중 2,600,000m²에 대한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계획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고, 개발사업단계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광단지 지정은 이미 받았고 조성계획만 변경되었으므로 재해영향평가만 실시하면 되는지?

!

답변

- ☞ 재해영향평가제도 도입(’96.6.21) 이전에 관광진흥법 제54조가 정한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 ☞ 관광진흥법 제54조가 정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다만, 관광진흥법 제54조가 정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30%이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게 됨.



질의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관광사업 계획 승인 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부지조성이 아닌 단순 크루즈선을 이용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 설치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현황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6조(사업계획승인 심의 인허가 의제 등)에 의거 관광숙박업(수상관광호텔)을 하기 위하여 접수된 민원으로 사업계획은 바다에 크루즈선(7,900톤)을 이용 객실, 레스토랑, 사우나, 커피숍 등 영업을 하기 위한 수상호텔로서 사업면적은 7,500m²임.

▶ 내용

- 동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별표1” 아 2)항 규정에 의거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관광사업을 위하여 부지 조성이 아닌 단순 크루즈선을 이용 바다에 수상호텔을 조성 시에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15조가 정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바다위에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수상호텔을 설치하는 경우, 태풍이나 폭풍, 해일 등에 의하여 동 시설이 전복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풍 등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진행을 하여 완료가 된 상태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제출하여 협의토록 의견을 받았음. 사업부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전혀 없고 건축면적만 약간의 변경이 생긴 상황인데 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참고로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사업을 수행 중임. '05.5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면적은 151,147m²임. 해안가와 접해 있고 배수 유역도 바다로 흘러감. 따라서, 면적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었지만, 유역이 바다로 향해있어 협의 제외대상이었음.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을 151,147m²을 32,000m² 증가인 183,147m²로 확대 변경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 수행할 예정임.
위와 같은 사항일때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한 결로 간주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답변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1항 별표1의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대상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별표1 2.개발사업의 비고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15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함(단 본질의와 같이 2005.8.17 이전에 승인된 사항은 협의 대상이 아님)
⇒ 본 질의의 경우 관광지 조성변경(32,000m²)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여부를 질의 하신 것으로 증가규모가 30% 및 45,000m² 미만으로 협의(변경) 대상이 아님.

8. 기타사업



질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的 경우에 해당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사항(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또는 실시계획 인가 대상인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주택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임.



질의

- ▶ 농어촌휴양단지개발(『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67조, 제70조)과 관련하여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중 (개발사업)부문에 가장 1번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협의 시기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전에 협의 하여야 하나. 특구지정 후 농어촌휴양단지(15ha) 지정을 통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농어촌휴양단지의 개발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하여 심의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06년 3월에 설계된 사업으로서, 30년 이상 농업용수를 공급 하고 있는 토공 용수로를 용수손실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개거를 설치하는 사업임. 공사 전·후에도 유역면적, 수혜면적, 용수량, 수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대상사업에 대한 관련법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토공 용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설치하는 공사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 최초 협의 시에는 市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 후 의견을 수렴하여 마무리 하였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재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으로 '05. 5. 18일 이전에 사업계획(예산확보, 실시설계 등)이 수립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다면 공사 중이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되는지?
- ▶ 각종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을 업무의 미숙 또는 고의 등으로 협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우연히 담당부서에서 협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사전협의를 받지 않은 대상이 행정계획일 때의 경우와 개발 사업일 때의 경우의 조치 방법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답변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전에 중앙·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한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한 것임.

- ☞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할 수 없으며, 중앙·지역본부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치 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의 “입지 유형별 검토”에서 산지나 농촌, 도시지역 같은 경우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로 어려움은 없는데 가끔 임(30%), 전(20%), 담(10%), 잡종지(5%)등이 골고루 있는 경우 산지지역(임)으로 봐야할지 농촌지역으로 봐야할지 아님 두 지역 모두를 해당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 입지유형별 검토항목의 적용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로 판단되기는 하나, 현 지목과 용도가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대상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지여건을 검토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근거에 의한 별표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분리된 법적용 기준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 중 행정계획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 할 경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재해예방사항 검토를 주된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개발사업은 개발계획에

대한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 결정 · 지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주 대상으로 적용하였음.
☞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은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 직전단계까지 추진과정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최종반영 하였음.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에 보면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근거한 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상 · 하수도관로 등)의 설치는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기사업 설치인가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의 제출요구가 있어 몇 차례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상 · 하수도 사업이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상 · 하수도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은 아니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수해복구공사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거쳐야 한다면 수해복구공사 모든 사업이 대상인지 아니면 사업량 및 사업에 따라 다른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원상복구시설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해복구공사도 상기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음.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 1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과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질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공장 공사를 하던 중 강우에 의한 산사태로 부득이 부지정리를 다시 실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변경허가(일시전용) 및 부대시설의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참고로 공장부지 면적 및 건축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공장증설변경 승인 대상도 아님.



답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변경) 허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은 아님.



질의

▶ 해양 낚시공원을 해상 수심 6~11m 정도에 설치를 계획 중에 있음. 전체 계획 면적이 15,000m² 정도이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대상 사업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현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의 실시근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해당되어 현재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임.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실시근거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은 행정계획단계로서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

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할 수 있음.



질의

- ▶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산업단지는 해안에 인접하여 우수가 바다로 직접 유출되고 있음. 행정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개발사업단계가 진행 중임.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획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하여 재난 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는 제도로서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함.
- ☞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배수계획 뿐만 아니라 해일, 조위, 태풍·폭풍, 연약지반 등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시 ○○자동차 판매(주) 부지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배수처리를 바다로 직접 유출도록 계획 수립 시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제외되지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바다에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하류지역에 재해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으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항만, 매립지 등의 사업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 ☞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전, 실시계획 인가 전에 각각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군 시설(의무근무대, 군장병 휴양소)에 대하여 기부양여사업으로 해병대와 협의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음.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두 가지를 문의 드립니다.
- 1) 의무근무대의 경우, 사유지(임야, 공장부지) 약32,000m²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득하여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 추진 및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2) 군 장병 휴양소의 경우 국방부소유필지(약13,000m², 군부대시설이 있음)에 건축물 시공 후 기부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등을 득하는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

- ▶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 시설인 인조잔디구장(7,420m²)과 실내게이트볼장(865m²)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지 않은 실정임. 지금이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도 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가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따라서 관계법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

- ▶ 이번에 5개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서류 사전환경성검토서는 5개 공장을 하나의 서류로 묶어서 작성함. 그렇다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도 5개 공장을 1개의 서류로 작성해도 되는지? 재해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인데 5개 공장을 개별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됨.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 따라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부지 면적 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질의

▶ 현황

- 건명 : ○○도청 이전신도시 도시개발 재해영향평가 용역
- 면적 : 9,938,000m², 착수일 : 2007년 9월
- 개요 : 본 사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임.

▶ 그러나 소방방재청 문서 “평가관리과-701”에 따르면 ’08. 6. 1이후에는 사전 재해로 전환시행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음. 본 사업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개발단계)에도 해당사업에 포함됨. 현재 재해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상태이며, 사업시행자의 검토 후 내주쯤 소방방재청에 재해영향평가(초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기 전 단계임.

▶ 내용

- 1) 본 사안에 대해 재해영향평가서(초안)을 소방방재청에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개발단계)로 전환하여 향후 승인신청 시(부속도서의 위상으로) 접수하여야 하는지?
- 2) 관계기관 협의(시, 군, 그 외 관련기관)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 3)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4) 사전재해 영향성검토(개발단계)로 전환 시행할 경우 협의방식이 승인신청 시 별첨문서의 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 5) 승인신청 전이라도 별도로 승인부서로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 6)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부속도서의 위상으로 승인신청 서류의 별첨 서류의 위상을 갖는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또한 동일한 위상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 답변

- ⇒ ’08. 5. 20일자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개선 지침에 따라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가 정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08. 6. 1일 이후 신규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서에 반영하여야 함
-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7조가 정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시 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질의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여부?



답변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규정 되어 있음.



질의

-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토계획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변경 주요 내용

- 구역면적 : 약 643,500m² (구역계 및 구역면적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 기 완료된 택지개발사업내용 및 현황을 반영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 계획을 수립함
- 구역 내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변경
 - 주차장 변경 결정 수반 : 당초 426m² → 변경 2,376m² (증 1,950m²)
 - 완충녹지 내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 B=1.5m, L=1,077m
※ 참고사항 :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일 1991년 10월

- ▶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행정계획단계 중 가목 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 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 지역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질의

▶ 광업법에 의거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2000년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5,000m² 이상이며 사업장을 공장으로 등록하고자 함. 이런 경우 절·성토 및 부지면적의 증감, 건축물의 변경이 전혀 없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 ☞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제3호가 정한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 된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골프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중임. 재해영향성평가가 사전재해로 대체된 결로 알고 있음. 재해영향평가 시 18홀 이상이면 중앙심의로 알고 있는데 사전재해로 바뀌면서 지역심의와 중앙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심의일 경우 소방방재청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접수도 소방방재청에 해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립·허가권자(관계행정기관)가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 현황

- 비관리청 항만공사(5선석 : 5천톤급, 3만톤급, 5만톤급, 10만톤급, 20만톤급) 시행허가를 득하여 일부 5만톤급과 3만톤급은 준공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 중에 있으며,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접한 산업단지의 항만시설용지(2선석 : 3천톤급과 5천톤급)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공사 중에 있음. 산업단지 부분의 항만 시설용지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5천톤급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 완료 하였으나 항만공사의 나머지 부분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질의

-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토록 되어있는바 금회 산업단지의 항만시설용지 및 그와 접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지역을 도시계획시설(항만)로 결정코자 함. 이와 같이 관계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중에 있거나 완료된 지역의 도시계획시설(항만)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수행할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하여야 하는지?



답변

-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부지면적 5,000m² 이상이거나 도로, 하천 길이 2km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친 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곳(면적 : 약 7만m², 도시개발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데 바다와 인접해 있어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 수립이 가능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바다에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즉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지만 바다로 직접 유출되거나 배수계획이 수립될 경우 안받아도 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는 제도임.
- ☞ 따라서 사업대상지가 바다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수계획 뿐만 아니라 해일, 조위 상승, 태풍 및 폭풍, 연약지반에 의한 지반침하 등 재해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법에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영 시행 후 수립·결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하천정비기본계획(계약일 : '08. 2. 22, 준공예정일 : '09. 2. 22)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 ☞ '08. 9. 22일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08. 9. 22일 이후에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질의

▶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자 해당 관청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사항을 받았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자는 적절한 기술자격을 가진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



답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시에는 부지면적 10,000m² 이상인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과 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이 정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여야 하며,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질의

▶ '08. 9. 26 개정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확대되어 협의대상이 된 경우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대상사업임. 이 경우 방재표준품셈에서 1-5 단위업무별 소요인력 표준원단위의 3.개발사업과 4.개발사업(정량적 분석을 포함한 경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량적 분석을 포함한 경우가 용역 비가 높아 용역업체에서는 무조건 4.호의 경우로 발주를 해야 한다고 함. 궁금한 점은 정량적 분석을 포함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가 모호함. 품셈의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답변

- ☞ 개발사업단계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정성적 및 정략적 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규모와 입지여건에 따라 정량적 분석(토사유출, 홍수유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 ☞ 방재분야 표준품셈은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실제적용은 사업지구 특성, 지형, 작업의 난이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됨.



질의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차이점은?
- ▶ 또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 법으로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폐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영향평가 법 항목이 신설되는 것인지?
- ▶ 마지막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신설된 '05.1.27일부터 현재까지 재해영향 평가와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 절차가 이중이 아닌지?



답변

- ☞ 재해영향평가는 개발대상지에 대한 홍수·토사유출, 사면안정성 해석을 통하여 저류지 설치 및 규모 등의 시설기준을 심의·평가하는 제도이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개발대상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 검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에 방재계획 반영 여부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역의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차원에서 방재계획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임.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09. 1. 1일자로 재해영향 평가는 폐지되었음.
- ☞ '05. 8. 17일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 왔음.



질의

- ▶ '08. 9. 26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시 "별표1" 2. 개발사업 비고 4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 되었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의제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런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2. 개발사업, 비고 4에 해당되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참고로 '08. 7. 21일 동일사업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이 아님을 민원 회신된바 있음.

담번

- ⇒ 협의대상 적용 시기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일인 '08. 9. 28을 기준으로 하며,
- ⇒ '08. 9. 28일 이후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의제대상 중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150,000m²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질의

- ▶ 기존에 재해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09년 이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영구적으로 계획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된 경우 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협의를 시행해야 하는지? 재협의가 계속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재해영향평가를 받았던 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의 존폐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재해 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담번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09.1.1일자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폐지되었음. 이에 따라 '08. 5. 21일자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선사항 처리지침에 따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정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사업장의 여건 변동에 따른 재협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08. 12. 31일까지 재해영향평가협의 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후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개발사업 비고 1에 보면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법 제25조의 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해야 하는지?
- ▶ 행정계획에서도 재해위험지구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는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한다면 면적에 관계없이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재해를 경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 개발사업단계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같은 법 제25조의 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5,000m², 2km)에 관계없이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는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대체적으로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평)를 재협의하는 용역의 경우 전차수행자(당초안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대행자)가 대부분 수행하는 것 같음. 재평(재협의)시 원대행자가 반드시 재협의를 실시도록 한 규정(법규, 규칙)이 있는지? 재평(재협의) 대행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법규, 규칙)이 있는지? 기본 및 실시설계사가 대행자로서의 자격이 불가한지?



답변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09.1.1일자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폐지되었음. 이에 따라 '08. 5. 21일자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선사항 처리지침에 따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정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사업장의 여건 변동에 따른 재협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08. 12. 31일까지 재해영향평가협의 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후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성 검토를 받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시 토지이용이 변경되어 원형지의 변경없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 각각 발생한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 등의 사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첫째,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내부 배수유역이 변경된 경우,
- 전체 대상지 100만m² 원형지 25만m² 기준에 2개의 배수유역이 각각 35만m² (A유역), 40만m²(B유역)이였는데 변경되어 41만m²(A유역), 34만m²(B유역)으로 변경된 경우
- 둘째, 최종 방류구가 1개 지점에서 2개 이상의 지점으로 변경된 경우,
- 방류수가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른 소하천(또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협의 대상?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2.개발사업 비교 1의 규정에 의거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이 대상규모의 변경 없이 사업지 내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사항은 협의 대상이 아님.
- ☞ 참고로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배수유역 및 저감대책의 변경이 수반 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결과가 사업계획변경 인가서류에 첨부되어야 할 것임.



질의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지구, 구역, 단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에 대하여?
- 질의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행 여부
- 질의 2) 개발사업의 비교란에 표기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보아 협의대상 일 경우 사업시행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전인지?

! 답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은 동법 제11조에서 다른 법률의 인·허가사항 등을 의제할 수 있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2.개발사업 비고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될 것임.



질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을 별표1의 예외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 대상 부지 현황 : '84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사업(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로) 허가 받아 유류 저장소로 조성되어진 평坦부지에 대하여 당초 건축(개발)허가면적 23,925m², 변경 60,113m²(증가 36,188m², 30%이상임)
 2. 금번 기업체에서 공장용도로 사용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당초 허가면적 23,925m², 변경 60,113m²(증가 36,188m², 30%이상 면적증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협의 대상여부를 판단코자 아래와 같이.
 - 가. 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3호 규정 적용 가능?
 - 나. 또한 상기 "가"항 질문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으로 별표1의 예외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절·성토 사면(1m미만)과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등 별도로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

답변

- ☞ “가에 대한 답변” 도시계획사업(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로) 허가를 받아 유류 저장소로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된 사항이라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 ☞ “나에 대한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된 사항으로 관련법에 의거 절·성토의 적절성, 배수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질의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토지이용 및 영구저류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재해 영향평가를 받았던 사업의 재협의 대상?

!

답변

- ☞ 舊,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제도(2009.1.1일부터 폐지)에서,
 - ‘재협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 중 영구적으로 계획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舊,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4호)이며, 이 경우(=‘재협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임 첨부파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8년 하반기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 舊,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4조(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의한 “협의내용 변경”인 경우에는, 舊,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하면 됨.
 - 따라서, 금번사업의 경우 ‘재협의’인지 ‘협의내용 변경’인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상기한 바와 같이 처리하면 됨.
 - 참고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의거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단계)를 이행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법제8조) 지정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및 협의시기?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4개지구)의 면적은 1지구 : 1,000,000m², 2지구 : 75,000m², 3지구 : 350,000m², 4지구 : 75,000m²임.



답변

-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 참고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2. 개발사업의 비고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질의

- ▶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는 기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져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재해영향평가 당시 재해영향평가 시행 여부를 검토하여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재해영향평가 미 시행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졌음. 현재 대상사업지구 전체면적의 5%(40만m²)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음.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면적변화는 없이 대상지 내에서 5%(40만제곱미터)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답변

- ☞ ○○지구 실시계획 승인시기, 사업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불가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2. 개발사업 비고 1.에 의하면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5,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규모의 증가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 ○○중학교를 신축예정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한 시행계획 협의는 자연재해대책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시계획인가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인지?



답변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의 대상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별표1, 2, 개발사업 비고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1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 ▶ 행정계획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서검토협의 시에 행정 계획을 수립 시와 개발사업 확정·허가 시에 두번의 별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계획단계나 개발사업단계중 어느 단계에서 한번만 받아도 되는지?



답변

- ☞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계획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두번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1항 및 3항에 의거 행정계획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과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협의를 받아야 함.



질의

- ▶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 결정되어있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166,770m³)의 일부부지(14,950m³)에 대하여 동일 시설을 중복결정하려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답변

- ☞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장)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폐기물 처리시설 : 중간처리시설)하는 것은 기존 시설의 일부를 기능이 유사한 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계획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질의

- ▶ 본 사업은 ○○시 ○○구 특별지구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실시계획단계의 사업으로 기존 ○○연구개발특구 2단계 기본 구상사업으로 행정계획을 완료 하였음. 실시계획단계를 진행하면서 사업지구 내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이 개발제한 구역 해지를 선행하게 되었으며, 이 개발제한구역 해지관련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진행 중임.

- 질의 1. 개발제한구역해지 절차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여부
- 질의 2. 개발제한 구역 해지 절차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추후 실시계획인가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해도 되는지?
(면적은 약 1,700,000m³임)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 ☞ 두번째 질의의 경우 민원인이 언급하신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의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임.



질의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실시계획 승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 조성실행계획 승인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 2. 의제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 ⇒ 주거(준주거) 및 상업, 승인기관 : ○○광역시)이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비교란에 “의제되는 사업이라도 15만m²이상인 개발사업은 협의 대상임”에 의거 협의대상?



답변

- ☞ 구체적인 관련도서가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실시계획 승인,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 조성실행계획 승인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개발사업)이 아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2. 개발사업의 비고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m² 이상인 경우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개발사업”에만 해당됨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행정계획은 적용되지 않음.



질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제외 조항인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2항 2호에서,
 -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상기내용을 협의할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해석



답변

- ☞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며,
- ☞ 국방부장관이 상기 사항을 위하여 협의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1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해석하고 있음.(예,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



질의

- ▶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에 속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비밀사업으로 추진 중인
○ ○ 병원 이전사업을 위해,
 - 당초 사업부지(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재산)를 국방부로 소관재산으로
인계 · 인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지정 · 요청
하는 하고자 하는 경우임.
- ▶ 상기와 같이 국방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의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2항 2호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사항으로 보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서,
-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
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은,
- 국방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 ☞ 따라서, 급번 사업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인 ○ ○ ○ ○ 부, ○ ○ ○ ○ 부 및 ○ ○ 실
등과 사전에 긴밀히 업무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2항
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질의

- ▶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대전역세권 재정 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08. 6. 1일부터 소방방재청 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개선사항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본 과업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 1) 본 사업이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사항 처리지침’ 내용 중 『자연재해대책법』 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업, 채석단지 허가 등의 개발사업에 포함 되어 재해영향평가를 계속 시행하여야 하는지?
 -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로 전환 시행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시행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 ☞ ’08. 5. 20일자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개선 지침에 따라 재해 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08. 6. 1일 이후 신규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 협의대상 여부 관련



질의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하여 승인하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다만,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15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 ▶ 사업계획승인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05년 7월 13일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았으며, 동년 7월 12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설계도서 미비로 인해 보완을 받아 2006년 3월 보완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각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임. 이 경우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와 동법 88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계획의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 ▶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 『주택법』 제17조(다른 법률에 인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라는 조항이 있으며, 동조 3항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된바, 여기서 말하는 “해당 법률”的 범주에 “자연재해대책법”이 포함되고, “관계서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해당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고 있음.
- ☞ 다만, 『주택법』 제17조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 대상이 아님.
- ☞ 『주택법』 제17조제3항의 내용 중 “해당 법률”은 제1항 각호의 1에 포함된 법률을 말하여, “관계서류”에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 대행자, 대가기준, 조례 및 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시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4조제5항에 “중앙본부장 및 지역 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령 상에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운영함에 있어 검토위원회를 꼭 조례로 구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검토위원회 구성을 아니 하고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통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해영향에 관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재난안전대책 본부 담당 공무원의 검토·협의 처리가 가능하나,
- ☞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이 많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 검토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처리 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담당자 임의로 결정해야하는 사항인지?
▶ 또한, 검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히 검토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의뢰와 관련하여 협의 요청사항의 검토의뢰 대상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항목과 검토방법 등에 대하여 고시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05. 12. 30일 고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사전재해영향성검토/관련규정/고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제2005-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 ▶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군 단위 지자체의 위원장은 누가 되는지?
- ▶ 그리고 위원구성에 있어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지?

!**답변**

- ☞ 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시·군”的 경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으로 위촉 가능함.



질의

▶ 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질의

-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해주어야 하는지?
- 공무원이 위원회 구성 시까지 협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답변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해영향에 관한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처리를 하여야 함.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승인기관)이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본부장에 통보하여야 하는 데, 통보받은 날이 관계행정기관이 받은 날로부터 30일인지?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에서 통보받은 날로 30일 인지?



답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질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협의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결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함.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된 업체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전기 공급설비) 시설결정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06. 11. 29 미등록 업체인 (주)○○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용역 계약을 하여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미등록 업체인 (주)○○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 하여도 되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하여금 대행 할 수 있으며,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제도 시행일('07. 7. 3)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 용역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음.

질의

▶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2007년 3월에 ○○업체와 계약하여 2007년 6월경 검토서를 작성완료 하였음. 그런데 현 시점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07년 7월경 시행령 개정으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함. 그래서 업체에 문의 했더니 대행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함. 이미 비용을 다 지불 했는데 다시 등록업체에 맡겨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작성당시의 기간으로 보아 유예기간이 있는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하여금 대행 할 수 있으며,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제도 시행일('07. 7. 3)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 용역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음.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에 보면 시행일('07. 7. 3) 이후부터 작성하는 방재안전 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방재안전대책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해설에 보면 “법 시행일 ('07. 7. 3)이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방재 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사전재해영향검토 업무 등)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저희 당사에서 '07. 6. 10 토목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모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07. 6. 29 접수를 하였으나, 부지의 효율 문제로 인하여 '07년 7월에 취하를 하였다가 부지면적 일부를 제쳐시키고 토목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재작성 하여 '07. 7월경에 재접수를 하였음. '07. 6. 10 용역 업체와 계약 체결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체가 소방방재청에 등록이 되지 않았음. 현재도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소방방재청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에서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하여금 대행 할 수 있으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제도 시행일('07. 7. 3)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 용역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음.



질의

▶ ○○시 ○○자동차 판매(주) 부지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배수처리계획을 바다로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처리계획 수립 시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제외되지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바다에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하류지역에 재해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으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항만, 매립지 등의 사업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 ☞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전, 실시계획 인가 전에 각각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질의

▶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공원조성계획 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공원조성절차는 이미 2003년부터 시행해 오던 것으로 2005년 10월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음. 또한 현재 G.B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 중에 있음.(금년 4월 승인예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는 '05. 8. 17 공포한 것으로 나오는데 시행 및 적용도 이 날짜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그러면 2005년 10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이미 득한 사항인 것도 지금 와서 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하는 것인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는 제도임.
- ☞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적용 시기는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 ('05.8.17)을 기준으로 하며, '05. 8. 17 이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질의

▶ 우리공사에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군시설(의무근무대, 군장병 휴양소)에 대하여 기부양여사업으로 해병대와 합의각서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음.

- 1) 의무근무대의 경우, 사유지(임야, 공장부지) 약32,000m²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득하여 사업추진 하여야 하는데 사업 추진 및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2) 군장병 휴양소의 경우 국방부소유필지(약13,000m², 군부대시설이 있음)에 우리 공사가 건축물 시공 후 기부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 건축 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득하는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 ☞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에 방재계획 반영 여부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 용역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적용 대상인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에 관한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가 정한 건설 기술용역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적용을 받고 있음.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08. 2. 22)의 개정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가 정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마친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가 정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승인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 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협의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 부지조성이 완료되었다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질의

- ▶ 본인은 임야 15,424m² 토사를 채취하여 육상골재 채취장의 복토용으로 사용하고자 함. 그런데 토사채취장은 사전재해성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등록업체에서 작성하여야만 접수가 된다하여 등록업체에 확인한 결과 1,000만 원의 경비를 요구하였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꼭 등록업체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해영향성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지?
- ▶ 등록업체에서 하여야 된다면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본인은 법을 찾아보아도 등록업체에서 하여야 된다는 법을 찾을 수가 없음.



답변

-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토사채취허가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과 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이 정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여야 하며, 다만, 제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질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행정계획 중 비고 2 나목과 관련하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L=460\text{m}$, $B=20\text{m}$, $A=9,200\text{m}^2$)을 시행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인지?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행정계획) 여부가 연장 2km이상인 도시계획시설(도로)만 사전협의 대상인지? 아니면 연장 2km이상이거나 도로 면적이 5,000 m^2 이상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협의 대상인지?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별표 1”에 따른 기본계획·정비계획에 속하는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 집행에 속하는 개발사업단계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 부지면적 5,000 m^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조성, 산업단지조성, 공원조성과 같이 사업의 규모를 면적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고, 길이 2km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종류는 도로, 철도, 하천과 같이 사업의 규모를 선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며,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경우에는 길이 2km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질의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수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함. 금년 2. 22일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 ▶ 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이 5,000 m^2 이하의 사업규모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동일사업자가 인접 지역에 대해 5,000 m^2 이하의 규모로 각각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할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함. 단, 각각의 사업부지는 인접되어 있고, 총 면적은 5,000 m^2 를 상회함.

! 답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획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가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며,
-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재해영향을 받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범위에 해당된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응답사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인 쇄 : 2009년 12월 일
발 행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Tel. 02) 2100-5464, 5466
Fax. 02) 2100-5459

인 쇄 처 : 파피루스 신정인쇄 02)2273-6384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 Tel : 02-2100-5466 | <http://www.nema.go.kr>